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접수일자 및 제출자 : 1998. 9. 17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1998. 9. 17
- 다. 상 정 일 자 : 1998. 10. 27(제7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상정, 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청소행정과장 구용대)

행정절차법 시행('98. 1. 1)에 따라 공중화장실 이용, 관리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시에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처분이유제시, 처분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공중화장실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미이행한자와 유료공중화장실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시 종전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를 동시에 하였으나 이번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를 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